

산학협력단 개요 및 설립현황

□ 산학협력단의 필요성

- 국·공립 대학은 법인격이 없어 자기 책임 하에 계약을 체결하거나,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취득할 수 없음
- 사립대학도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적 성격에 불과
- 산학협력은 계약체결, 지적재산권 취득 등 법률행위를 하여야 하므로 이를 추진할 「산학협력단」 설립

※ 다른 법령과의 관계

- 특허법 제39조 및 기술이전촉진법 제9조의 「기술이전 전담조직」 (산학협력법 제27조)
- 이공계열 학과가 설치된 국공립 대학은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치가 의무적임 (기술이전촉진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)

□ 산학협력단의 법적성격

<산학협력법 상>

- 대학의 장의 지도·감독을 받는 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다음의 기능에 한해 법인격을 갖는 특수법인(이중적 지위)
 - 대학의 지적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의 주체
 - 산학협력계약의 주체
 - 대학의 산학협력관련 회계의 사용 및 관리 주체

<세법 상>

○ 비영리 법인(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40호)

- 국·공립 및 사립의 산학협력단 성격은 동일
-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을 동시에 수행

※ 대학 및 학교법인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산학협력 활성화 미흡

산학협력단 설립현황

(‘05. 2. 현재)

구분	일반대학교			전문대학			합계
	국공립	사립	계	국공립	사립	계	
학교수	46	153	199	15	144	159	358
설립(등기) 완료	46	133	179	15	139	154	333
비율	100.0%	86.9%	89.9%	100.0%	96.5%	96.9%	93.0%
미설립	-	20	20	-	5	5	25

개정 세법별 세부검토 내용

1 부가가치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·공립 대학은 국가 및 지자체로 간주되어 부가세가 면제되나, 국·공립 산학협력단은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
 -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 중 ‘새로운 이론, 방법 등에 관한 연구’만이 부가세 면제 대상이나,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세금을 추징당하는 사례 빈번
 - 국가 및 지자체가 산학협력단에 제공하는 연구비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, 기업으로부터 수탁받는 연구비 중 상당부분이 정부 예산인 경우가 많음
 - 이에 대해 사후적으로 부가세를 추징할 경우 산학협력단 자체재원으로 부담해야 함 → 정부지원 연구비 감소 결과
 - 대학에서 과학·교육용으로 수입하는 재화는 부가세가 면제되나,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있음
- ※ 관세법(시행규칙 제37조제2항, '05.2.11) 개정으로 산학협력단에도 관세 면제

세법 개정 요구사항

-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이 부가세 감면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
- 산학협력단에서 수입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

- 학술연구단체 및 기술연구단체의 범위에 산학협력단 포함
 -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1호(종교·학술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)
- 학술연구용역·기술연구용역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 포함
 -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(인적용역의 범위)
- 산학협력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
 -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
- 수입용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
 -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(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)

세수손실 추정 : 475억원

- '03년 대학 연구비 1조 9천억원 \times 25% \times 10%

□ **신구조문대비표(안)**

① **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	<p>제37조(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) 1. ---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</p> <p>2-4. 생략</p>		<p>제37조(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) 1. ---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(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은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로 본다.</u>)</p> <p>2-4. 생략</p>			<p>개 정</p>

② **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	<p>제11조3 (인적용역의 범위) ① - ② (생략) ③ 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”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말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		<p>제11조3 (인적용역의 범위) ① - ② (현행과 같음) ③ .영 제35조 제2호 라목에서 “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”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·방법·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 및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연구용역</u>을 말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			<p>개 정</p>

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06조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(이하 본문 생략) 1. - 10. (생략) (신설)</p>	<p>제106조 (부가가치세의 면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1. - 10. (현행과 같음) 11.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</u></p>	신설

④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

현행	개정안	비고
<p>제12조의2 (과학용 시설등의 범위) ①영 제41조제1호에서 "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설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. (이하 본문 생략) 1. - 10. (생략) (신설)</p>	<p>제12조의2 (과학용 시설등의 범위) ①(현행과 같음) 1. - 9. (현행과 같음) 10.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</u></p>	신설

2 법인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·공립 대학은 국가 및 지자체 기관으로 간주되어 기부금의 100%가 손금에 산입되나, 산학협력단(국·공·사립)은 100분의 50밖에 인정되지 않음
 - 또한, 인정기간이 '06. 12. 31로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음
- 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을 '고유목적사업 준비금'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⇒ 법인세 감면 효과
 - 그러나, '06. 12. 31로 일몰규정으로 되어 있음

□ 세법 개정 요구사항

- 산학협력단은 정부 예산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비영리 특수 법인이란 점을 고려하여 '기부금 특례 범위 확대 및 일몰규정 폐지' 및 '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특례 기한연장' 필요

- 기부금 특례 적용시한('06. 12. 31) 폐지 및 손금한도 범위 확대(50/100 ⇒ 100/100)
 - 조특법 제73조 (기부금의 손금산입 특례)
-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기한 연장: '06. 12. 31 ⇒ '09.12.31
 - 조특법 제74조 (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)

□ 세수손실 추정 : 40억원

- 사립대학의 법인세 납부실적 : 33억원('04년, 한국사학진흥재단)

□ **신구조문대비표(안)**

① **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	<p>법 제73조 [기부금의 과세특례]</p> <p>① 내국법인이 2006. 12. 31 이전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-----100분의 50 (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)을 곱하여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</p>			<p>법 제73조 [기부금의 과세특례]</p> <p>① 내국법인이 2009. 12. 31 이전(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및 산업교육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제외)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-----100분의 50(제1호·제2호의 경우에는 100분의100)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.</p>		<p>개정</p>

② **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	<p>법 제74조 [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특례]</p> <p>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<u>2006.12.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 연도까지</u> 법인세법 -- (생략) ----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</p>			<p>법 제74조 [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산입특례]</p> <p>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2009. 12.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-- (생략) ----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.</p>		<p>기간 연장</p>

3 상속세 및 증여세

□ 현황 및 문제점

- 국·공·사립 대학은 상증법 상 공익법인이나, 산학협력단은 포함되지 않아, 지방세, 상속세·증여세 등을 부담
 - 산학협력단이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
 - 산학협력단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의 대가로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,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
 - 현재 우리부와 재경부가 공동 추진 중인 ‘대학기업’제도 도입을 위해서도 주식보유 한도를 없애는 것이 필수적임
- ※ 운용소득의 100분의 99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할 경우 상증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, 보유주식을 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처분하여야하는 부담 발생

□ 세법 개정 요구사항

- 산학협력단을 공익법인에 포함시키고, 기술이전 확대 및 spin-off기업 설립 활성화를 위해 주식보유 한도 삭제

- 산학협력단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
 -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(공익법인 등의 범위)
- 산학협력단의 주식 보유한도 삭제
 -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(주식등의 보유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 등)

□ 세수손실 추정 : 추정 곤란

□ **신구조문대비표(안)**

① **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제12조 (공익법인 등의 범위) ①법 제16조제1항에서 "공익법인등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. (이하 본문 생략) 1. - 9. (생략)	제12조 (공익법인 등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1. - 10. (현행과 같음) 10.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의 사업</u> 11. 제1호 내지 제5호·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					신설

② **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**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제42조 (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) ②법 제49조제1항 단서 후단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등"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이하 본문 생략) 1. - 3. (생략) (신설)	제42조 (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) ② (현행과 같음) 1. -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</u>					신설

현황 및 문제점

- 대학의 교사시설은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, 산학협력단은 이에 해당되지 않고 있음

※ 농어촌특별세가 감면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, 제 2004-44호(2004.12.30)에 의해 감면

 세법 개정 요구사항

- 산학협력단을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포함 필요

- 비과세 대상에 산학협력단 포함

- 행정자치부 고시(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한 감면, 제2004-44호, 2004.12.30)

 세수손실 추정 : 추정 곤란

 신구조문대비표(안)

⑨ 행정자치부 고시(2004-44호, 2004. 12. 30)

현	행	개	정	(안)	비	고
행정자치부 고시 (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, 2004-44호,2004.12.30)		행정자치부 고시 (농어촌특별세가비과세되는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에 의한 감면, 제2004-44호,2004.12.30)				
1. - 20. (생 략) (신 설)		1. - 20. (현행과 같음)				신 설
		21.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재산에 대한 감면</u>				

5 지방세

현황 및 문제점

- 대학은 지방세법 상 비영리사업자이나, 산학협력단은 해당되지 않아, 재산세, 사업소세 등이 과세되고 있음

※ 지방세법(제288조제4항 등) 개정으로 산학협력단의 취득세·등록세 등은 면제

세법 개정 요구사항

- 산학협력단을 지방세법상 비영리사업자에 포함 필요

-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(비영리사업자의 범위)

세수손실 추정 : 20억원

- '04년 사립대학의 지방세 납부실적 : 57억원(한국사학진흥재단)

신구조문대비표(안)

① 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

현	행	개 정 (안)	비 고
제79조 (비영리사업자의 범위)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"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. 1. - 5. (생략) (신설)	제79조 (비영리사업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1. - 5. (현행과 같음)	제79조 (비영리사업자의 범위) ① (현행과 같음) 1. - 5. (현행과 같음) 6. <u>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 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학협력단</u>	신설

산학협력단 관련 개정 필요 법령

구분	법령명	적용내용	비고
1	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	산학협력단을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포함	부가세
2	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3항	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용역 명시	부가세
3	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	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	부가세
4	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2조의2	수입하는 과학용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	부가세
5	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	기부금 손금 특례(범위 확대 및 일몰규정 연장)	법인세
6	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	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 특례(일몰규정 연장)	법인세
7	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	산학협력단을 공익법인 범위에 포함	상속세 증여세
8	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	주식등의 보유한도 기준 적용대상 제외	상속세 증여세
9	농어촌특별세법 제4조	산학협력단 재산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	농특세
10	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	지방세법 상 비영리사업자 범위에 포함	지방세

<첨부 4>

산학협력단 관련 기 개정 법령

구분	법령명	적용내용	비고
1	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	학술연구용품의 관세감면 대상기관의 범위에 산학협력단을 포함	관세
2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	연구 및 인력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을 손금으로 처리하여 과세이연의 혜택을 부여	법인세
3	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	각 사업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 법인세 직접공제 효과인 세액공제를 적용	법인세
4	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	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되는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한 소득금액에 100분의 50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함	법인세
5	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	산학협력단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여 손금에 산입함	법인세
6	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	산학협력단을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단체에 포함	법인세
7	소득세법 제34조	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필요경비에 산입	소득세
8	지방세법 제288조	산학협력단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, 등록세, 재산세, 도시계획세, 공동시설세를 면제	지방세
9	지방세법 시행령 130조의4	산학협력단의 법인균등할 주민세를 부과세	지방세

<첨부 5>

대학 및 산학협력단 과세 현황 비교

(2005. 5. 16. 현재)

세 목	국·공립 대학	사 립 대 학		산학협력단	
		대학 회계		고유목적회계	수익사업회계
		교비회계	교비수익회계		
<부가가치세> ○ 종교·자선·학술·구호·기타공익목적으로 공급하는 재화와용역의 범위 해당 여부 (조특법 제106조 : 면세조항)	비과세	비과세	과세	과세	과세
○ 부가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 포함 여부 (부가세법시행령 제 35조 : 면세조항)	과세	과세	과세	과세	과세
○ 학술·기술연구용역의 면세범위에 포함 (부가세법 기본 통칙 12-35-4)	조건부 비과세	조건부 비과세	과세	조건부 비과세	과세
○ 수입하는 과학용 시설 등의 재화에 대한 부가세 면제 (부가세법제 12조의 2)	비과세	비과세	과세	과세	과세
<법인세> ○ 비영리사업 (법인세법제1조2호:비영리내국법인)	비과세	비과세	-	비과세	-
○ 기부금의 손금산입범위 (조특법 제73조:기부금의 과세특례)	(소득금액-기부금한도 초과액-이월결손금등) × 100%	(소득금액-기부금한도 초과액-이월결손금등) × 50%			
○ 법인세법상 수익 사업 (조특법제74조: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)	비과세	과세	과세	과세	과세
<상속세및증여세> ○ 기업발행주식의 5% 초과보유분면세여부 (상증법시행령제 42조)	비과세	과세	과세	과세	과세
○ 공익범인에 포함 여부 (상증법시행령 제12조)	비과세 (포함)	비과세 (포함)	비과세 (포함)	과세 (미포함)	과세 (미포함)
<관세> ○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(관세법 시행규칙제 37조제2항)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	비과세
<소득세> ○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의 범위에 대상기관포함 여부 (소득세법시행령제 18조 제1항)	과세 (개인소득 대상은 기관이 아님)	비포함 (과세)	비포함	비포함	비포함

세 목	국·공립 대학	사 립 대 학		산학협력단	
		대학 회계		고유목적회계	수익사업회계
		교비회계	교비수익회계		
○ 기부금의 필요경비손금산입 여부 (소득세법 제34조 제2항)	(종합소득-기부금한도초과액-이월결손금) × 100%	(종합소득-기부금한도초과액-이월결손금) × 100%	(종합소득-기부금한도초과액-이월결손금) × 10%	(종합소득-기부금한도초과액-이월결손금) × 100%	(종합소득-기부금한도초과액-이월결손금) × 10%
<농어촌특별세> ○ 시설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감면 여부 (농어촌특별세제4조에 대한 행자부 고시 제 2004-44호, 2004.12.30)	감면	감면	과세	과세	과세
<지방세> ○ 취득세 및 등록세 (용도구분) (지방세법 제288조 등)	비과세	비과세	과세	비과세 (부동산에 한장)	과세
○ 지방세법상 용도구분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로 분류 여부 (지방세법 시행령 제79조)	비과세 (국가로간주)	비과세 (비영리사업자)	과세 (수익사업자)	과세 (미포함)	과세 (수익사업자)
○ 재산세 (용도구분) 2005.1.1 종토세와 통합	비과세	비과세	과세	비과세 (부동산에 한정)	과세
○ 주민세 비과세 대상 여부 (지방세법 시행령 제130의 4)	비과세	비과세	과세	비과세	비과세
○ 도시계획세 (재산세과세자만 대상)	비과세	비과세	과세	비과세	과세
○ 공동시설세	비과세	비과세	과세	비과세	과세
○ 사업소세	비과세	비과세	과세	과세	과세
<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> ○ 특허료 또는 수수료 (특허법 제83조) ○ 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(특허법·실용신안법·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한 특허료·등록료·수수료 의징수규칙 제7 조 제1항)	감면 (100%)	감면 (50%)	감면 (50%)	감면 (50%)	감면 (50%)